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발급번호	2426-5303-0679-7050	발급일자	2023년 10월 6일 15:48:27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686-3, 302호

세대순번	세대주 /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제1동장 부산진구 범천제1 동장인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301-7 302호] 조회 결과와 일치합니다.

담당자 의견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입 0049 busanjin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00원 2023.10.06 N-AT219107 지급 서류발행일: 2023.10.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제1동장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천제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발급번호	2216-5003-0679-7340	발급일자	2023년 10월 6일 15:48:55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686-3, 501호

세대순번	세대주 /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1	세대주	김 길현 (金吉炫)	2020-10-30	거주자	동거인				
	최초 전입자	2020-10-30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제1동장 부산진구 범천제1 동장인

담당자 의견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조회한 결과가 함께 제공되오니, 양 주소 조회 결과를 반드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입 0050 busanjin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00원 2023.10.06 N-AT219107 지불 서류발행일: 2023.10.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제1동장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범천제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발급번호	2216-5003-0679-7340	발급일자	2023년 10월 6일 15:48:59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301-7 501호

세대순번	세대주 /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제1동장 부산진구 범천제1동장인

담당자 의견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조회한 결과가 함께 제공되오니, 양 주소 조회 결과를 반드시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